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무원의 월권 또는 지위 이용 권리행사방해 처벌〉
■ 전종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360호)

2026.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2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3
가. 직권남용죄 관련 외국 입법례	3
나. 직권남용죄 관련 입법론 및 종전 개정안 논의 경과	5
다. 검토의견	7
라. 관계기관 의견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전종덕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2025. 9. 29.
3. 회 부 일: 2025. 9.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대법원은 직권의 ‘남용’이란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권한 행사의 외관을 가 지나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월권행위’를 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사법농단 사건에서의 재판개입 행위 등이 그 비난가능성 및 가벌성에도 불구하고 처벌되지 못하여 국민의 법감정에 심히 반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렀던 것임.

이에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 외에도 월권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도 처벌하여, 공무원의 직권행사의 엄정성과 준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23조).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① 조 제목을 현행 “職權濫用”에서 “직권남용등”으로 바꾸고, ②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직권을 월권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직무권한 외의 사항에 관하여 사람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도 직권남용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3조).

현행	개정안
第123條(<u>職權濫用</u>) <u>公務員이 職權을 濫用하여</u> 사람으로 하여금 <u>義務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權利行使를 방해한 때에는 5年 以下の懲役, 10年 이하의 資格停止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處한다.</u>	제123조(<u>직권남용등</u>) <u>공무원이 직권을 남용·월권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u> ----- <u>의무없는</u> ---- <u>권리행사를 방해한</u> ----- <u>5년 이하의 징역, 10년</u> ----- <u>자격정지</u> --- <u>1천만원</u> ----- <u>벌금에 처한다.</u>

현행법 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즉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어,¹⁾ 해당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

1)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2800판결,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2800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139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하여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직무권한의 위법·부당한 행사에 못지않게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 바,²⁾ 개정안은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이 “직권을 월권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가. 직권남용죄 관련 외국 입법례

외국 입법례를 살펴보면, 독일 형법은 공무원의 직무범죄를 사기죄, 문서위조죄, 강요죄와 같은 기본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공직자가 그 권한이나 지위를 남용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범죄 형태로 규정함.³⁾ 공무원의 직권남용죄를 강요죄의 가중적 양형사유의 예시 형태로 규정하면서, 개정안과 유사하게 권한의 남용과 지위의 남용을 같이 규정하고 있음.⁴⁾

2)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판결] 등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므로 직권남용죄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함.

3) 장진환, 독일형법의 직권남용 규정에 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3권제2호, p.10

4) 「독일 형법」

제240조(강요) ① 폭행 또는 상당한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 또는 위계로 다른 사람에게 위법하게 작위, 수인 또는 부작위를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③ (생략).

④ 특히 중한 경우에 6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이 경우 특히 중한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1. 임산부에게 낙태를 강요하는 경우

독일 형법에서 직권남용죄의 가중적 양형사유로 ‘권한 또는 지위를 남용한 경우’를 규정한 이유는 행위 양태(樣態)의 특수성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아 실무에서 가중처벌하던 것을 ‘특히 중한 경우’의 예시로 입법화한 것으로서, 여기서 ‘지위 남용’은 범죄자가 자신에게 존재하지 않는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를 강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권한남용’과 다르다고 이해됨.⁵⁾

스위스 형법은 ‘위법한 이익을 얻게 하거나 타인에게 불이익을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고, 우리 「형법」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것을 구성요건 요소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우리 「형법」과 마찬가지로 ‘지위 남용’을 규정하지 않음.⁶⁾

일본 형법은 우리 「형법」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때에 처벌하도록 규정함.⁷⁾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에서는 공무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가 부정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인 ‘직권 또는 직위의 남용’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직권남용을 범죄로 규정하기 위한 입법을

2. 공무원으로서 권한 또는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

5) 장진환, 앞의 논문, p.16

6) 「스위스 형법」

제312조(직권남용) 관청의 구성원 또는 공무원이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위법한 이익을 얻게 하거나 타인에게 불이익을 가하기 위하여 자신의 직권을 남용한 때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

7) 「일본 형법」

제193조(공무원 직권 남용)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음.⁸⁾

미국 연방법은 직권·지위의 남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으나, ‘법의 컬러(under color of law)’라는 개념⁹⁾을 사용하여 직권·지위를 남용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박탈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¹⁰⁾

나. 직권남용죄 관련 입법론 및 종전 개정안 논의 경과

직권남용죄의 개정 방향과 관련 다음과 같은 입법론이 있음.¹¹⁾

1) ‘지위 남용’을 처벌 대상에 추가하자는 입법론

현행법이 지위 남용을 직권남용죄로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 불법과 비난가능성이 오히려 더 클 수 있는 무권한자의 행위에 대해 형법적 판단을 할 수 없어 사법(司法)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동요를 가져올 수 있으며,¹²⁾ 월권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반하고, 국가권력 행사의 공정성이라는 법익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

8)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제19조 직권남용

각 당사국은, 공무원이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무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가 부정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직권 또는 직위의 남용, 즉 위법하게 행위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할 것을 검토한다.

9) ‘법의 컬러(under color of law)’는 법률의 외관·형식을 빌려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단순히 합법적인 권한 내에서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적인 권한을 초과하거나 남용하여 행동하는 경우도 적용됨.(미국 법무부 홈페이지 <https://www.justice.gov/crt/deprivation-rights-under-color-law>)

10) 미국연방법 18편 제242조[법의 컬러로(under color of law) 권리 박탈]

누구든지 법률,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관습의 컬러로(under color) 주, 영토, 연방, 점령지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의 타인에 대하여 고의로 헌법에 의해 보장되거나 보호되는 권리, 특권 또는 면책특권을 박탈하거나, 국적 혹은 피부색 또는 인종을 이유로 자국민 처벌에 대해 규정된 것과 다르게 처벌, 제재 또는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이 둘은 병과될 수 있다. (이하 생략)

11) 장진환, 독일과 한국의 제3자 뇌물수수죄에 대한 비교법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4권제2호, 2022, p.15

12) 조기영, 직권남용죄의 개정방향, 비교형사법연구 제23권제2호, p.82

해서 지위의 남용을 처벌대상에 추가하여 당벌적 행위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임.¹³⁾

2) ‘남용의 구성요건’을 보완하자는 입법론

대법원 판례에서 ‘남용’의 해석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나 여전히 모호하므로,¹⁴⁾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불법한 이익을 얻게 하거나 타인에게 불이익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을 각각 추가하여야 한다는 입장임.¹⁵⁾¹⁶⁾

직권남용죄와 관련 그간의 개정논의로는 제21대국회에서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4626호),¹⁷⁾ 송기현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3098호)¹⁸⁾이 있었으며, 범죄수사나 재판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 법외곡 행위를 처벌하려는 법안들이 있었음.¹⁹⁾

13) 김성돈, 앞의 논문, p. 228; 오병두, 직권남용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검토, 형사법연구 제32권제2호, p.172; 조기영, 앞의 논문, p.90

14) 헌법재판소 2006. 7. 27. 2004헌바46 결정에서 권성 재판관의 반대의견은 ‘남용’이라는 표지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부당한 사용’이라는 문언적 의미만으로는 과연 어떠한 행위가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함.

15) 강준우, 직권남용죄, 직권남용죄 개정안 마련을 위한 입법공청회 (2021. 5. 17) 자료집, p.27~28

16) 다만, 직권남용죄에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을 추가하자는 견해에 대해서는 i) ‘남용’이라는 개념에는 이미 위계·위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ii) 폭행·협박 또는 그보다는 불법이 낮은 위계·위력을 사용하지 않는 직권 또는 지위 남용도 형법적 당벌성이 있으며, iii) 판례 상 미필적 인식만으로 그 목적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목적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직권남용죄의 오남용을 실효성 있게 통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반대의견(조기영, 앞의 논문, p.94)과 「형법」상 목적범은 내란죄 등 형량이 무거운 범죄 등에 제한되어 있어 ‘목적범’으로 하여 극히 예외적으로만 범죄가 성립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견(김남근, ‘지위이용’죄 신설과 ‘남용’ 해석의 제한, 앞의 자료집, p.37)이 있음.

17) 직권남용죄의 처벌 대상에 ‘지위를 이용하여’ 권리행사방해 등을 한 경우를 추가하고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21대 국회 임기만으로 폐기되었음.

18) 직권남용죄의 처벌 대상에 ‘지위를 남용하여’ 권리행사방해 등을 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제21대 국회 임기만으로 폐기되었음.

참고로, 현재 ‘그 지위의 영향력을 이용’한 경우를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이견대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6069호)과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으로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하거나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을 추가하는 내용의 신장식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432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임.

다. 검토의견

i) 직무권한을 넘어서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크다는 점과 ii)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넘어 그 지위를 이용해 위법·부당한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국가기능에 대한 침해 위험을 발생시키는 범죄를 강요죄²⁰⁾와 별개로²¹⁾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인정됨.²²⁾

19) 2020.6.26. 발의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1090호), 2020.9.10. 발의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3745호), 2022.2.21. 발의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4791호)

20) 「형법」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1) 직권남용죄를 강요죄에 대한 구성요건으로 보는 독일과 달리, 우리 「형법」 상 직권남용죄는 강요죄와 독립한 진정신분범으로 보며, 공무원이 폭행·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직권남용죄와 강요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것이 다수 학설임.[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2015), p.639; 이형국, 형법각론(2007), p.76; 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각론(2017) p710; 임웅, 형법각론(2005)p.810].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완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으로 “월권”을 추가하는 개정안의 경우, i) 그 자체로 처벌의 범위가 직무범죄를 넘어 무한히 확장될 위험이 있고, ii) 직무범죄로 한정할 경우에는 “지위를 이용하여”와 그 범위가 중첩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경우,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법(私法)상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처벌 대상으로 하게 되는 점에서 처벌 범위가 무한하게 확장되어 공무원의 직무범죄를 처벌하려는 규정 취지를 벗어날 위험이 있음.

반면에, “월권”의 처벌 대상행위를 공무원의 직무범죄로 한정하면, 공무원이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범죄로 한정할 수 밖에 없는 점에서, 개정안의 “지위를 이용하여”와 중첩되는 문제가 있음.

둘째, 개정안 중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구성요건은 다소 모호하고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이는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 원칙과 관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22)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도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의 행사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는 사람을 상대로 직무권한을 넘어서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자신에게 속하는 직무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 못지않게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별도의 입법이 없는 이상 현행법의 해석만으로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함.

구성요건 상 “지위를 이용하여”라고만 규정하고, 지위의 종류나 성격과 이용의 정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모든 공무원의 모든 지위 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이에 따라 법적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는 협조 요청이나 권고, 단순한 사실 통지 등도 지위를 이용한 행위가 될 수 있음.²³⁾

특히, 고위직 공무원 등과 같이 직무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사회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위를 밝히고 하는 공적(公的) 행위나 사적(私的) 행위까지 모두 지위를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음. 이는 사법상 불법행위나 공법상 징계 대상행위까지 형사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확대해석될 수 있어 형벌의 보충성 측면에서 처벌 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셋째, ‘월권’이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범죄구성요건의 불명확성과 그로 인한 처벌의 확대가능성 측면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대법원은 현행법 상 직권 ‘남용’의 의미를 직권의 ‘불법행사’,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²⁴⁾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²⁵⁾ 등으로 해석하고 있음. 이와 비교하여, 개정안의 ‘월권’이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구성요건은 그 규범 내용을 명확하게 인식하여

23) 대법원은 알선수뢰죄(「형법」 제132조)의 구성요건인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를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지만,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42 판결 등)

24)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등

25)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도2444 판결 등.

어떠한 행위가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일관성 있게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명확하고 광범위함. 이는 결과적으로 형사소추권자의 자의적 범집행 허용과 처벌 대상의 부당한 확대 위험성을 초래함.²⁶⁾

또한, 공무원은 어떠한 행위가 처벌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행동을 주저하게 되어 정당한 권한 행사를 위축시키고 국가기능을 저해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²⁷⁾ 지위이용 범죄의 구성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정리하면, 개정안은 직무권한을 넘어 지위를 이용한 위법·부당한 권리행사방해 등을 처벌함으로써 국가기능행사의 공정성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더욱 보장해야 할 입법 필요성이 있으나, 개정안의 “월권”의 경우, 그 자체로는 처벌의 범위가 직무범죄를 넘어 무한히 확장될 위험이 있고, 직무범죄로 한정할 경우에는 “지위를 이용하여”와 그 범위가 중첩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월권” 및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구성요건은 다소 모호하고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사법상 불법행위나 공법상 징계대상행위까지 형사범

26) 독일 형법 제240조제4항제2호에서 “지위 남용”을 가중적 양형사유로 규정하였지만, “폭행 또는 상당한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 또는 위계”를 구성요건으로 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데 있어 공직이 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형법과 차이가 있음.(장진환, 앞의 논문, p.16~17)

27)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사업에 대해 이를 반대하지 않으면 직권남용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공무원들이 새로운 정책이나 행정을 추진할 때 검찰에 의해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닌지를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 바 있음. 정부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여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해 이사회가 대주주 총수의 거수기에 불과하여 지배구조가 불투명한 기업에서 이사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회복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고도 결국 아무런 개혁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정책에 개입하는 것이 직권남용죄 수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를 경계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음. 국정농단 사건에서 기소된 직권남용죄의 30%가 무죄가 될 정도로 어떤 행위가 직권남용죄가 되고 어떤 행위는 아닌지에 대한 구별에 대해 법조인들도 견해가 다기하고 판례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수범자인 공무원들이 행정재량이나 정책집행이 위촉되는 부작용도 분명히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김남근, 앞의 글, 37쪽).

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확대해석될 수 있어 형벌의 보충성 측면에서 처벌 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라. 관계기관의 의견

법원행정처는 어떠한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구성요건,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임. 다만, 현행 규정상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그 구성요건이 추상적 용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지적이 있는 점에서, 개정안의 지위를 이용한다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모호하고 불명확하게 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056